

—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2월 3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2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2월 11일

제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구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고
- 도량동과 봉곡동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도량동 일부지역 ⇒ 봉곡동으로 편입(7필지 3,731㎡)
- 봉곡동 일부지역 ⇒ 도량동으로 편입(21필지 27,157㎡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행정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따라서, 지역여건이 변화된 도량동과 봉곡동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승인됨에 따라
-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도량동 일부지역 7필지를 봉곡동으로 편입하고 봉곡동 일부지역 21필지를 도량동으로 편입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